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61
----------	-----

제출년월일 : 2000. . .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정이유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며
- 신설이 요구되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물류정책심의위원회,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등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예방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은 물론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 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물류시책, 소비자보호 시책, 등을 심의토록 함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정함 (제3조)
- 위원회의 회의방법 및 의결정족수와 표결 방법을 정함 (제5조)
- 위원회의 간사는 경제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유통정책담당사무관이 되도록 함 (제7조)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 위원회, 물가대책분과위원회,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 유통·물류정책분과위원회,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 전자거래정책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방법을 정함 (제8조)
-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청취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조례안 : 불임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부분발췌) : 불임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 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물류시책, 소비자보호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공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물류시책에 관한 사항
6.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
7. 전자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소비자보호, 유통, 물류, 물가, 전자상거래 등 지역 경제와 관련된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나. 언론인, 물가 관련 기관·단체의 장, 근로자단체 대표 및 시민 단체 대표
- 다. 상공회의소의 임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라.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마. 정보통신 또는 전자거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2항 제2호의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유통정책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위원회
2. 물가대책분과위원회
3.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

4. 유통·물류정책분과위원회

5.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

6. 전자거래정책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견 청취) ①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심의안건제출) ①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제23조 내지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 보칙”을 “제3장 보칙”으로 하고 제30조 내지 제33조를 제23조 내지 제26조로 한다.

“제5장 벌칙”을 “제4장 벌칙”으로 하고 제34조를 제27조로 한다.

관 련 법 규(부분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제3조 (유통단지심의위원회) ④유통단지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유통단지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유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지방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第3條 削除 [2000·1·28 法6239] [[施行日 2000·7·29]]

□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 (물류정책위원회 등)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28] [[施行日 2000·7·29]]

□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대규모점포개설자 등에 대한 권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그 인근 지역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 분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대규모점포 또는 인근 지역의 도매점포 및 소매점포에 대하여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1. 점포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일 것
2.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될 것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22조 (권고절차 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현황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⑧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